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#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5. 5. 15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5. 15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전문가 자문인 위촉 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위촉에 따른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.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전문가 자문인 위촉기간 수정 및 연임 제한 규정(안 제3조제3항)
- 전문가 자문인 수당 지급 방법 규정(안 제7조제2항)

## 3. 개정조례안: 붙임

##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전단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1년”을 “연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문가 자문인의 잔여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하며,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문가 자문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 · ② (생 략) ③ 위촉기간은 <u>1년</u> 이내로 하 되, <u>연입</u>할 수 있다. &lt;단서 삭 제 2022.6.15.&gt;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3조(위촉절차 및 위촉기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년</u> ----- -- <u>한 차례만 연입</u>----- -----.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 (생 략) ② <u>1년</u> 단위로 위촉하는 자문인 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 며,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 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.</p>	<p>제7조(수당과 여비지급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<u>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